**의원, 특별의원 대표자 선정통보**

|  |  |
| --- | --- |
| 회사명 및 기관단체명 |  |
| 소 재 지 |  |
| 선정 대표자 | 직 위 |  |
| 성 명 | (한글) | (한자)  |
| 생 년 월 일 |  |
| 대표자 자택주소 |  *\*명절 선물 등 수령 가능 주소* |
| 자택전화번호 |  |
| (실제)생일 |  *\*음력/양력 표기*  |
| 전 화 |  사무실(비서):  |  팩 스:  |
| 휴 대 폰 |  대표자:  |  비 서:  (성명/직위: / ) |
| 이 메 일 |  대표자:  |  비 서:  |

 상공회의소법 제26조, 울산상공회의소 정관 제41조에 의하여 의원 대표자를 위와 같이 선정 보고합니다.

2024년 월 일

 주 소 :

 업 체 명 :

 대표(이사): (인)

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󰠚

별첨 : 1. 이력서 1부 2. 반명함판(4×5) 사진 3매

**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귀하**

|  |  |
| --- | --- |
| 사 y 진(4cm x 5cm)  | **울산상공회의소 의원 이력서** |
| 성명 | 한글 |  | 생년월일(실제생일) |  |
| 한자 |  |
| 주민등록번호(앞) |  |
| 영문 |  |
| 전화번호 |  | E-mail |  |
| 주 소 |  |
| 학력 | 기 간 | 학 교 명 | 전 공 |
|  |  고등학교(졸·중퇴) |  |
|  | 대 학 교(졸·중퇴) |  |
|  | 대 학 원(졸·중퇴) |  |
| 경력사항 | 기 간 | 근 무 처 | 직 위 | 업 무 내 용 |
|  |  |  |  |
|  |  |  |  |
|  |  |  |  |
|  |  |  |  |
|  |  |  |  |
|  |  |  |  |
|  |  |  |  |
|  |  |  |  |
| 대내외포상 | 일 자 | 내 용 | 시 상 처 |
|  |  |  |
|  |  |  |
|  |  |  |
|  |  |  |
|  |  |  |
|  |  |  |
| 위에 기재한 이력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2024년 월 일성 명 : (인) |

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**

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제21대 울산상공회의소 의원, 특별의원으로서 다음 항목에 대해 제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동의합니다.

- 다 음 -

○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목적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구분** | **항 목** | **목 적** |
| 1 | 성명, 생년월일 | ⋅본인식별 절차에 이용 |
| 2 | 전화번호(휴대폰 번호 포함) | ⋅상공회의소 공지사항 등 서비스 정보제공 |
| 3 | 주소 | ⋅우편물 발송 등 |
| 4 | 본인의 우대사항※ 경력, 이력서, 기타 사항 등 | ⋅우대사항에 대한 확인⋅포상 및 위원 위촉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 |

○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|  |  |
| --- | --- |
|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| 2024. 2. ~ 2027. 3. \*제21대 울산상공회의소 의원 기간 |

□ 동의함 □동의하지 않음

2024년 월 일

**업 체 명 :**

**성 명 : (서명)**

**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귀하**

**<참고사항>**

**[상공회의소법]**

**제26조(법인의원의 대표자)**

① 법인으로서 의원이나 특별의원으로 선출된 자(이하 “법인의원”이라 한다)는 그 법인의 임원(영업소, 공장 또는 사업장에

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)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업무를

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.

1.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격제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2. 같은 상공회의소의 의원

3. 같은 상공회의소의 다른 법인의원의 대표자

③ 법인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공회의소에 알려야 한다.

**※ 제23조(의원 등의 자격제한)**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과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.

1. 회원이나 특별회원이 아닌 자

2. 피성년후견인
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(復權)되지 아니한 자

4.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

5. 금고 이상의 실형(實刑)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2년이

 지나지 아니한 자
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7. 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, 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(職)에서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의원과 특별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의원 및 특별의원은 면직된다.

**[울산상공회의소 정관]**

**제41조(법인의원의 대표자)**

①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의원과 특별의원으로 선출된 자(이하 "법인의원"이라 한다)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(임원이 없는 경우에는

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자로 한다)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.

1. 제3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2. 본 회의소의 의원

3. 본 회의소의 다른 법인의원의 대표자인 자

③ 법인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 회의소에 알려야 한다.

**※ 제39조(의원등의 자격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 및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.**

1. 회원이 아니거나 특별회원이 아닌 자

2. 피성년후견인

3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4.「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

5.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6.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7. 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의원ㆍ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이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